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61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이병진・박 정・최기상

이훈기 • 남인순 • 권향엽

문대림 • 허성무 • 박용갑

강준현 · 임미애 · 김영호

이원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에 따라 특례의 기간과 진료비의 본인부 담률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 중 희귀질환은 특례기간 5년, 본 인부담률 10%이며,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산정특례를 추가로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말소 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바, 본인부담률을 5%로 줄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만성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특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에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9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투석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급 권자가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 당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투석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
	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로 투
	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
	권자 본인이 해당 급여비용 총
	<u>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u>